

제 603 호

1977.4.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 조 례
 - 제 1160 호 수도권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161 호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1695 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4
 - 제 1696 호 수도권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
- ◎ 관리규정
 - 제 5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고처리규정..... 6
- ◎ 고 시
 - 제 10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41
 - 제 10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41
 - 제 106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지적승인... 43
 - 제 107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지정변경고시..... 43
 - 제 108 호 서울특별시 1977 년도하천토석, 사력
채취로고시..... 4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보도제정	공보제정	문화공보	문화공보	문화공보
1544	1544	1544	1544	1544	1544

◎	공	고	
	제	78	호 환지계획 일부 변경 공람 공고.....44
	제	80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45
	제	81	호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45
◎	사	령4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
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60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4 호 다음에 1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 (위원회)

15.운동장건설분과위원회

제 4 조 제 2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제 4 조 (구성) " 다만 운동장건설분과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31 인이내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공업용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61 호

서울특별시공업용 급수조례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 공업용 급수조례중 나
옴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의 별표 제 2 호 및 제 7 조의
별표 제 3 호 "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426
 서울특별시 1161호
 1977년 4월 14일

<별표제 2 호> 공업용수사용료율표			
구분	사 용 요 금		
기본요금	신청량 전부에 대하여 1㎥당 7원		
초과요금	신청량 초과분에 대하여 1㎥당 20원		
<별표제 3 호> 급 수 관 손 료			
구경별	요 금	구경별	요 금
13 %	1천 1개월 150원	150 %	1천 1개월 4,000원
20 "	300원	200 "	5,600원
25 "	400원	250 "	6,900원
40 "	600원	300 "	8,200원
50 "	1,200원	400 "	11,200원
75 "	2,400원	500 "	15,300원
100 "	2,800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규 칙 </div>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7년 4월 14 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전과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 1695 호			

〈 별 표 〉				
실과명	위 임 사·무 명	위임구분	수 입 기 관	근거및 적용법규
기전과	1. 전기사용량확인, 요금지불 및, 수급계약 2. 상수도사업용 자동차유지관리 가. 신규차량구입 및 등록 나. 노후차량대차, 폐차	내부위임	수원지사사무소장 배수지사사무소장 수도관리사업소장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규정 제20조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1977년 4월 14일</p> <p>◎ 서울특별시규칙 제 169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중 개정규칙</p> <p>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3 조 14 항다음에 1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3 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관 주무부서)</p> <p>(15) 종합운동장 건설본부장은 운동장 건설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p> <p>제 2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24 조 (운동장건설분과위원회) (1) 운동장건설분과위원회의 직부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축설계 및 공사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3. 신축자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2)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신속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p>		

두어 운영할수 있다.

③간사는 관리과장, 서기는 관리계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전사고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제 5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고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지하철 (이하 " 지하철 " 이라한다)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 에 대한 관계처의 보고 및 사고 원인분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철운전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의 보고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중대사고 " 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가. 제 4 조 1 호 내지 3 호에 해당하는 사고

나. 전호 이외의 사고로서 5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이 특히 중대한것

2. " 사망자 " 라 함은 즉사자 및 부상후 그 부상에 기인하여 24시간내에 사망한자를 말한다.

3. " 부상자 " 라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할 정도의 상해를 받은자를 말하며 3주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것을 " 중상 " 3주미만을 " 경상 " 으로 말한다.

다만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은 중상으로 한다.

4. " 작업원 " 이라함은 위탁 및 대행업무 종사원도급 및 직영공사

<p>작업원, 구내영업종사원, 실습생등으로서 지하철의 구역내 또는 차량에서 지하철의 수송 또는 공사등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p>	<p>10. "시정조치"라함은 사고의 원인이 될 불안정한 행위또는 조치가 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 또는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수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의 대책을 말한다.</p>
<p>5. "책임사고"라함은 직원의 취급과오, 직무태만, 시설장비등의 점검 및 보수소홀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을 말한다.</p>	<p>11. "기타" 지하철 전차(전차, 전차대3조여 정한 용어)의 운행을 규정에 적용한다.</p>
<p>6. "사고원인"이라함은 직접사고한 야기시킨 불안정한 행위또는 불안전조건등을 말한다.</p>	<p>제 4 조 (운전사고의 종류) 운전사고는 열차또는 차량의 운전중 일명인 사상또는 불건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7. "소인"이라함은 사고원인을 발생 조장한 근본요소를 말한다.</p>	<p>1. 열차충돌 열차가 다음열차 및 차량또는 도로상의 작업기재류(오차카, 전차차보신작업기재등)와 충돌하거나 조차 접촉하였을때.</p>
<p>8. "원인"이라함은 사고원인에 관련이 있는 타동계조건, 작업조건및 설비조건등을 말하며 사고원인과 관련사항 및 영향에 따라 소인과 구별한다.</p>	<p>2. 열차탈선 운전중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였을때</p>
<p>9. "사고분석"이라함은 운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시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의 제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위한 조사를 말한다.</p>	<p>3. 열차화재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p> <p>4. 사상</p>

관계직원의 취급과오로 인명의 사
 상을 발생케한때 또는 본인 및
 관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접촉하여 인명에 사
 상을 발생케한 때
 다만, 치료를 요치않는것을 제외
 한다.

5. 기 타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
 로서 사고 피해액이 50 만원이상
 인때

제 5 조 (운전과해의 종별) 열차또는 차
 량의 운전에 저해를 미치게 한것
 중 제 4 조에 규정한 운전사고에는
 이르지 아니한것으로 그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내원인

가. 차량충돌

차량상호충돌 및 접촉또는 차막
 이동에 충돌하였을때 (모타카 및
 트로리 포함)

나. 차량탈선

차량이 선로를 이탈하였을 때

다. 차량고장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에 영향을
 미쳤을때 (차량파손 및 화재로
 인한것도 포함)

라. 열차분리

열차운전중 분리되었을 때

마. 열차퇴행

열차 또는 선로 및 전차선의
 고장, 천후불량으로 후방 정거
 장방면으로 퇴행하였을 때

바. 차량일주

열차 또는 차량이 본선 또는
 측선에서 본선으로 일주 하였
 을때

사. 전철 장치고장

전철기 고장으로 발생하였을때

아. 신호장치 고장

신호기 C. T. C 조작반 궤도
 회로 단락등으로 발생한 것

자. 선로고장

선로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발생한 것

<p>차. 전차선 고장 전차선로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p> <p>카. 송전고장 급전설비, 신호용 배전설비의 고장 또는 파손 및 정전전압 강하 등으로 소정의 송전 불능으로 발생한 것</p> <p>타. 열차지연 직원의 출무지연, 작업지연 또는 작업의 파오, 미숙등으로 정거장에서 5분, 1 궤색구간에서 5분 이상 열차가 지연하였을 때</p> <p>파. 이선진입 열차가 진입할 정당선로 이외의 선로에 진입하였을 때</p> <p>하. 궤색취급 위반 궤색취급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발생하였을 때</p> <p>거. 신호취급 위반 신호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전철기 취급도 포함)</p>	<p>너. 기 타 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p> <p>2. 부의원인</p> <p>가. 열차방해 고의로 선로, 차량, 신호 기타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시설등의 손상을 가하거나 열차의 운전, 승객등에 위해를 가하였거나 또는 저해의 우려가 있어 열차를 정지하였을 때</p> <p>나. 선로지장 선로내 및 정널목에 물건의 방치, 사람또는 차량, 우마차, 동물 등의 침입으로 열차가 정지하였을 때</p> <p>다. 송전장애 외의부 송배전 시설의 고장, 파손 또는 정전등으로 정구의 수전이 아닐 때</p> <p>라. 보안장치 장애 운전 보안장치의 파손으로 열차</p>
---	---

<p>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때 차량, 우마차의 충돌, 전주, 수목등의 전도루, 신호기, 표지점널목 경보장치, 계도회로등이 손상되었을 때</p> <p>마. 기 타</p> <p>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의하여 발생된 것</p> <p>3. 재해원인</p> <p>가. 차량재해</p> <p> 풍수해, 설해등으로 차량의 탈선,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p> <p>나. 선로재해</p> <p> 풍수해, 설해등으로 선로 및 전차선의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p> <p>다. 상전재해</p> <p> 풍수해, 설해등으로 급전설비 또는 신호용 배전설비에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p> <p>라. 보안장치 재해</p> <p> 풍수해 설해등으로 운전보안장치의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p>	<p>을 때</p> <p>마. 기 타</p> <p> 전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p> <p>제 6 조 (사상의 중별) 사상은 열차또는 차량의 운전에 의하여 인명의 사상이 발생한것중 제 4 조 및 제 5 조의 운전사고 또는 운전저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중별은 다음각호와 같다.</p> <p>1. 승하차사상</p> <p> 승하차할때에 발생한 사상에 견대 승하차시 다른 승객에게 밀리어 넘어졌거나 차량과 승강장 사이로 추락하였거나 출입문에 끼여서 부상을 입은것등으로 발생한 것.</p> <p>2. 타동적 사상</p> <p> 타동적조건에 의하여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p> <p> 예컨대 창유리의 파손, 물건의 전락등으로 발생한 것</p>
---	--

<p>3. 직무사상 종사원이 운전업무 수행중 사상이 발생한 것 예컨대 차량 입환중 전락, 해결 작업 및 전철기 취급중 발생한것</p> <p>4. 기타사상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상이 발생한 것</p> <p>제 7 조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중별의 결정)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으로 그 이상의 중별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병발하여 발생한 때에는 최상위의 사고중별로 취급한다.</p> <p>제 8 조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의 급보) ①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해당자 (이하 "급보책임자"라 한다)는 지하철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관계역 소장 및 관할경찰서에 급보하여야 한다.</p> <p>1. 정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 역장 2. 정차장외에서 발생한 사고 - 운</p>	<p>전기사또는 차장</p> <p>3. 전 각호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발견자</p> <p>② 본조중 본부장에게 급보는 운수과 (운전사명)를 경유하고 최대한 빨리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발생후 30분이내에 본부장에게 도달케하여야 한다.</p> <p>③ 본조 급보는 별지제 1 호 서식에 의함을 원칙으로하며 응급시에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보고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운수과장은 별지제 8 호 내지 제 11 호 서식에 따라 사고처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 9 조 (감독기관에의 속보) ① 전조의 급보를 받은 본부장은 즉시 사고의 개요 조사한후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 및 교통부장관에게 속보하여야 한다.</p> <p>본 속보는 사고발생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사고 관련차량 또는 종사원이 철도청 소속일 때는 전항의 기준에 의하여 철도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p>
---	--

③ 전 1항의 속보는 사고복구 및 처리의 진전에 따라 그 개요를 시시로 후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급보사항) ① 급보책임자로서 급보를 요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즉시 판명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종별
2. 열차번호
3. 발생시분 또는 발견시분, 천후
4. 발생장소 (선명, 구간, 기점, 현부근 선로의 상황, 구배의 유무, 곡선등)
5. 편성 (편성번호, 편성차수등)
6. 관계자 직, 성명 (책임사고에는 채용 및 현직임명, 년월일, 년령)
7. 원인 (정확한 원인불명일때는 추정에 의한)
8. 손해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 등의 손상상태등)
9. 승객 (대략적 인원수 및 전도의 연락관계)

10. 사상 (국적, 남녀, 사망, 중, 경상별, 인원수, 주소, 성명, 년령, 직업등)

11. 사고의 상태 및 운전개황 (차량탈선 또는 전복기타의 상황, 운전방법, 속도등)

12. 본선 불통에 대한 수송조치

13. 사고의 조치 및 복구예정 (본선에 지장을 초래하였을때는 개통예정일시)

14. 구원을 요할때는 그 요지

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사고에 관한 급보로써 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사명전화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명전화기의 설치가 없을 경우 또는 이에 의한 수 없을 때는 타전화기 또는 열차무선 전화기를 사용한다.

제 11 조 (상호협조) 사고의 원인조사
 와 복구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관계자는
 상호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제
 공하여야 하며 사고원인조사를 기피
 하거나 증거물의 인멸, 훼손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사고보고서의 제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
 당책임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
 한 사고보고서 2 통을 (철도청 관내
 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3 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운수과장장
 유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시말서와 신상조사서 (별지 제 7 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차장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
 역장 및 운전기사 또는 차장의
 소속장
- 2. 정차장 외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
 운전기사 또는 차장의 소속장

3. 전 각호 이외의 장소에서 발
 생한 사고
 관제소속장

제 13 조 (고장보고서의 제출) 운전사
 고 및 운전저해의 발생사고에 있어
 서 차량, 선로, 전차선, 전력시설, 선
 호보안장치, 통신장치등의 시설 및
 자 의 고장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는 관제소속장은
 고장보고서 부부 1 통을 운수과장장
 유 운수과장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 및 피해액 조사에
 특이성이 있을때는 이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 14 조 (보고서의 처리) (1) 운수과
 장은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의한
 사고보고서 및 고장보고서를 관계
 책임자로부터 접수하였을 때는 사
 실을 조사하여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조서와 별지 제 5 호 서식의 조사

<p>의견서 및 별지 제 4 호 서식의 진술서 (사고관계자) 를 작성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조사결과 관계직원의 과 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운전사고 (유전저해 또는 사상) 불문조서를 작성 처리한다.</p> <p>(3) 운수과장은 별지 제 12 호 서식의 운전사고 발생월보 및 별지 제 13 호 내지 제 16 호 서식의 운전사고 분석표를 작성하여 익월 10 일 이내 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4) (사고원인조사) 사고발생의 원인이 복합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직명의 요원으로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원인조사를 하여야 한다.</p> <p>가. 원인조사요원</p> <p>운전계장, 운전사고주무, 보선계 장, 전력계장, 신호계장, 전차계장 (또는 검수계장)</p> <p>나. 전항의 조사반 구성에 있어서</p>	<p>운전계장, 운전사고주무를 제외한 사고발생 원인에 관계없는 해당 분야의 요원은 제외될 수 있다. 다. 전 1 항의 원인조사반은 기술담 당관의 지휘를 받아 운전계장이 통괄하여 종합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5 조 (원인불명시의 판단자료조사) 열차탈선 등으로 그 원인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 여 판단자료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발생시분 및 해당열차의 정 차장 출발 또는 통과시분 2. 증거물 및 그 산재위치 (산재위 치를 약도에 기재) 3. 탈선 차량후랜지 승상시점 및 통과흔적 4. 선로관계 <p>가. 궤도에 관한 일반사항</p> <p>수평 (탈선지점 전후 40 미터 에 걸쳐 조사할것. 다만 그 이상이 필요있을 경우에는 그 구역내) 방향 (상동) , 궤간 (상동 고도 및 광도 (상동) 궤간방향의</p>
---	--

<p>불균형 (상동)</p> <p>나. 권조 및 이음매부 마모 및 부식의 정도 마모 단면적 및 형상 내부홈 또는 균열, 절손상태 유간 및 부진의 정도 기타의 이상변형</p> <p>다. 개못 및 체결구 부상정도, 훼손, 굴곡 (형상도, 부식등의 유무) * 크릴 * 의 이완 훼손정도, 장력의 감소 라. 침묵의 부식상태, 절손, 피열의 정도 및 비율</p> <p>마. 도상 및 로반 도상의 종류 및 그량 로반의 양부, 배수상태 * 팩킹 * 의 규격 및 삽입부의 양부 동상의 유무 및 상태</p> <p>바. 기 타 특수장치 (예 : 레일엔카, 다키프 레이드등) 의 상태 평소 권도 보수 의 난이</p> <p>5. 운전관계</p> <p>가. 열차조종의 개폐지점 주간제어기, 제동기, 사용지점, 상용, 비상, 제동의 구별, 제동관</p>	<p>감압량 S.A.P 관 압력 또는 제동변 각도</p> <p>나. 속도 및 정지거리 당시의 속도 탈선지점에서 정지지점까지의 거리</p> <p>6. 차량관계</p> <p>제동장치기능 (제동관압력, 유하중 장치의 조정치, 피스톤 행정 등) 제동장치 각부의 파손, 날출한 것의 유무 및 그 낙하위치 * 사이드 베어링 * 의 부담 하중 조성상태 차량 * 후란지 * 의 마모상태 * 누액 * * 높이 * 및 령상, 담면, 마모상태와 차륜내면거리 상대 차륜의 직경차. 대차부 각 스프링의 높이 및 세약 정도, 절손유무 대차부 각 스프링 조정관의 상태 및 조정치 * 셉타피보트 * 라이나 및 조정관의 상태 * 스윙클스탁 * 부의 슬동판 상태 및 간격 축상베어링 및 치차환의 상태 (고착시)</p>
--	---

<p>방진교무의 상태 오일탑과 및 스윙항가등의 상태 주행장치부의 명소 보수상의 문제개소 전회의 정기검사 년 월 일</p> <p>7. 참고사항</p> <p>가. 기왕의 선로사고 및 차량사고 나. 전 열차현장을 운전할 때의 이 상 감지의 유무 다. 현장의 특이성</p>	<p>제 16 조 (계승역에서의 고장보고) 계 승역에서 발생한 계승전차의 파손 또는 고장으로 그 원인이 승무원 교대전에 있을 때에는 도착 전차 의 소목장이 보고하여야 한다.</p> <p>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급 보 구 분 표

사 고 분 류	사 고 구 분	내 용 및 급 보 청 종 별	내 용	급 보 처	
				시 장	교 통 부 장 관
운 전 사 고		열차 충돌	전 부	○	○
		열차 탈선	전 부	○	○
고		열차 화재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1시간이상 열차에 영향이 있는것 3. 원인이 악질적인것	○	○
		사상 사고	1. 공무집행중의 종사원에게 발생한것 2. 일시에 5인이상 사상자를 발생한것	○	○

분류	사고구분	내용및급보처	내 용	급 보 처		
				시 장	교통부 관 관	
운 전 제 원	부 내 원	차량 충돌	1. 본선을 지장한것 2. 사상자를 발생한것 3. 차량의 파손정도 심한것	○		
		차량 고장	1. 기기파손, 차축결손, 외동이완, 탈선등 중요한것	○		
		선로고장 전차선고장 추진고장	1. 개통에 1시간이상을 요한다고 인정하는것. 2. 열차에 1시간이상 영향이 있는것.	○	○	
	인	이선진입 폐쇄취급 위반	1. 차량충돌, 탈선등 중대사고 야기한것. 2. 원인이 심히 악질적인것 3.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	○	○	
		부 외 원	열차 방해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열차운행에 다대한 지장이 있는것 3. 범인 수사상 즉시 수배를 요하는것	○	
			선로지장	1. 자동차와 충돌한것 2. 사상자를 발생한것 3. 열차에 1시간 이상 영향이 있는것 4. 열차운전을 중지 및 반복 운전하는것	○	
	계 획 원 인	송전장애 보안장치장애	1. 복구에 1시간 이상을 요할때	○	○	
		차량제형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1시간이상 열차에 영향이 있는것 3. 원인이 악질적인것	○		
		선로제해 송전제해 보안장치제해	1. 개통에 1시간 이상을 요한것	○	○	

47-18

제 603 호

시

보

1977. 4. 14

본 부 장		운 열 담 당 관 기 술 담 당 관		진 설 과 장 공 무 과 장 전 기 과 장 전 차 과 장		운 수 과 장 운 수 제 장 운 전 계 장	
< 제 1 호 서 식 >							
운 전 사 고 통 보							
사 고 종 명		수 보 시 자	년 월 일 시 분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일 기						
발 생 장 소	선 역 간 기 점 K m 구 배 곡 선 역						
열 차	제 열 차		편 성 량		량 편 성 번 호 계 호		
관 제 자	직 명	성 명	연 령	현 직 발 명 년 월 일	직 명	연 령	현 직 발 명 년 월 일
개 황							
송 신 자				수 신 자			

<제 3 호 서식> 분류기호 수 참							운 전 사 고 조 서			시행년월일 발 신		
기 안 자		결					과					
협 조												
사 고 종 별					관 제 열 차		제		열 차 입 환			
발 생 시 일		년 월		일 분	발 생 장 소		기 점		선 키 로		간 미 터	
상	소 속		직 직		명 단		성 명		저 문 정 도			
발												
내 용												
(190 mm × 268 mm) 실 준 봉 지 50g / ㎡ 박 엽 지 20g / ㎡												

<제 2 호서식> 분류기호 수 신 <u>운 건 사 고 보 고 서</u> 참 조									
사고종별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요일)천후							
발생장소		선로상태 구역 연간 지점 ㎞지점 교량면 수도명 상하 곡선 좌우 교량면 수도명 선널널목명칭 종별							
열차및편성		계 열차 기 본부 호 현차 량 환산 량							
관 계 자	소속	직종	직명	성명	년령	학력	근속년수	해직년수	
<u>사고개황</u> 									

		발신		(인)
피 해	인 의	행 위	피해자실원	
	화 사	상 인		
발생상태 (현장약도물)				
조치 (사고 복구 관계등)				
사고원인 가 나.				
책임소재				
문제점				
소속장 의견				
보고자	작성자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소속장	확 인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380 - x268 - (박엽지709 / 남)				

<제 4 호서식(1)>

운전사고진술조서(1)

년	월	일	에서 발생한	계	열차
			사고에 대한	관련자	진술 조사서
관계자			소속		
직종	직명	성명	연령		
상기 사고에 대하여			년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다.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박엽지 20g/㎡

<제 4 호서식(2)>

운전사고진술조서(2)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
박엽지 20g/㎡

<제 4 호서식(3)>

운전사고진술조사서(3)

위의 진술한 것을 열람하였든바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
하고 서명 날인함.

19 년 월 일

진술인	주민등록 번호	성명	☉
-----	------------	----	---

조사자	직위	성명	☉
-----	----	----	---

(190 mm × 268 mm) 산문용지 50g/㎡
박엽지 20g/㎡

<제 5 호서식>

운전사고조사의견서

190 mm × 268 mm 갑을병 3년제
갑을 박엽지 19g/㎡ (2매)
병 산문용지 5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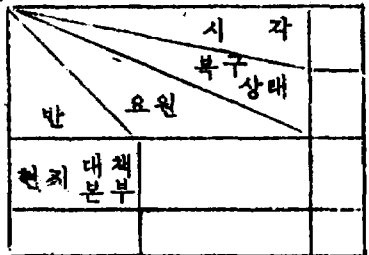
소 속 ①		직종 ②	직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성명 ⑤	생년월일 ⑥
학 력 ⑦		재직년월일 ⑧	학력재직년월일 ⑨
본 직 ⑩			
현 주 소 ⑪			
가정 환경 ⑫			
근무배도 ⑬		기 준 명 점 100 점	상벌관계 ⑭
직 계 관 년 ⑮			
교우대인관계 ⑯			
세 명 ⑰		차 준 명 점 100 점	직장경력 ⑱
교양성적 ⑲			
실무성적 ⑳			
개 성	장 점 ㉑	질 병 관 계	
	단 점 ㉒		
	특 기 ㉓		
사 고 와 관 사 면 소 속 장 의 견	본인의작업 전후 동태 ㉔		
	작업변경유무및 주의사항 ㉕		
	작업 유무 및 사항 ㉖		
	가정 실태 (사고관련사항) ㉗		
	사고요인 사건제거 ㉘		
	사고의요인 및 소인 ㉙		
사고처리에 대한건의 ㉚			
본인의 요망 사항 ㉛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1977. . . .	소속장 인

100 × 268 모조 70g / ㉛단면

<제 8 호서식>	
월 일	운 전 사 고 조 사 표
소속	장
통 보 자 및 발 생 시 작	계 - - - - 열차 직명 시 분 발생 성명
반 대 선 로 무 지 장 의 유 무	유 무 지장상태 긴 급 정 지 수 배 인 접 정 차 장 에 불 보
장 소 상 황	역 역간 담 절 불 중
사 상 자 의 유 무	사 자 { 여 객 명 공 직 원 } 명 상 자 { 여 객 명 공 직 원 } 명 구 호 수 배
충 돌 또 는 탈 선 상 태	T C 차 M M 차
선 로 상 태 가 선	(선 로) (가 선) 도 칩 상 복 단 수 선 하
구 원 의 요 부	유 부 부근무표 소 속 운 전 사
지 장 물	피 - 스 우 마 차 택 시 { 자 가 용 기 타 추 렷 관 용
경 보 기 작 용 의 유 무	유 부 전 널 목 간 수 주 소 성 명
전 널 목 에 서 일 단 정 차 의 이 행	일 단 정 차 이 행 일 단 정 차 불 이 행
현 장 과 외 연 락	사 용 전 화 회 선 명 공 중 전 화 승 무 원 용 무 선 기
기 타	현 좌 량 TC. M. 'M 전 차 구 소 환 산 량
적 요	1. 조사중 긴급수배 사항
190 mm x 268 mm 모조 709 / 1 단면	

<제 9 호서식>

본 부 사 고 부 구 확 인 표

번호	항 목	내 용	연 락 사 항			번호	항 목	내 용	연 락 사 항		
			상 대 자	시 분	기 사				상 대 자	시 분	기 사
1	부 구 예 정	부구에정시각									
2	부구작업현황 표 작성	현지 대책본부장과 부구작업 현황표를 작성한다. 			작업관리 담당자를 지정						
3	부 구 확 수	각반의 작업분담 및 순서 명령				4	기중기도착까지 의 준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구작업장의 정비 ◎ 전차선의 타설, 절단 ◎ 전차의 절단, 해체 ◎ 선로보수 	부구예정시각외보고		
						5	교대자 수배	부구시간이 장시간을 요할때 교대자수배 및 휴양장소설치	제 1 회	시	분
						6	외부능력의 활용	구행, 부구용 기관차, 기술자 공장관계요원을 요청수배	제 2 회	"	"
									제 3 회	"	"
									제 4 회	"	"
									제 5 회	"	"
									제 6 회	"	"
									제 7 회	"	"
									제 8 회	"	"
									제 9 회	"	"
									제 10 회	"	"
									대책본부에 예시보고		

속 보 사 항										속 보 자												
										시 간	소 속	성 명										
사 상	종	별	박	용	공	중	직	원	기	타	수	용	장	소								
	상	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중	경	상																			
	계																					
탈 신 상 황	차	종	진	행	방	향	탈	선	경	사	권	부	탈	선	거	리	지	형				
	T	C																				
	M																					
	M																					
	M																					
	M																					
	M																					
	T	C																				
계																						
전도승계인원																						
단체권 지정원	단체권	명 지정권 명																				
운전자 (가해자)	주소																					
	성명	근무처																				
선로피해상황	품	명	종		별		수		량													
	레	일	경	환																		
	침	목	생	환																		
	채	결	장	치																		
선로지장상황	기	타																				
	하	행 지 장																				
전차선피해상황	가	선	전	주	피	해	철		본		상		행		지		장		기		타	
	전	선	단	선	개	소	조		가		선		도		로		라		선		본	
	전	년	목	주	의	표	결		선		본											
	인	접	선	정	전	여	여		부													
전년목보안장치	전	년	목	경	보	기																
	자	동	차	단	기	용																
통신설비상황	기	타																				
	통	신	설	연	비																	
	개	- 분																				
통신회선	T	B																				
	기	타																				
	운	전																				
복구완료간	사	선																				
	계	선																				
복구완료간	전	신	중	계	화																	
	화	도																				

30CM x 200mm 227000 = 1면

구분 사고 종별		발생 일시	장소및 일차	원인	합계	인명		차량		선로		기타시설물		응급부구비		기타		
						사상 원인	금액	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380mm x 268mm 모크 70g / 1단면																		

<제 11 호서식>

운 전 사 고 피 해 역 내 역

(년 월분)

1560

<제 12 호서식 >

운 권 사 고 월 보

(197 년 월순보)

일련 번호	사고종별	발생일시	장소	열차번호	기번및 소속	원성	사고원인	원인	개황	처리

47-30

제 603 호

시

보

1977.8.14

1561

<제 13 호 서식>

사상사고원인 분석표 (년 월분)

원인 및 연명별 남녀 사상별	합 계	원 인																				합 계																
		여										공																										
		비	비	열	선	자	흡	투	열	열	열	전	전	나	전	차	기						선	선	자	비	비	열	중	차	구	선	교	수				
		승	강	락	행	살	차	석	돌	선	격	돌	돌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단	수	살	승	강	락	주	단	침	치	행	행	입	입	단	장
합	계																																					
계	사																																					
	중																																					
	경																																					
남	사																																					
	중																																					
	경																																					
녀	사																																					
	중																																					
	경																																					

	원 인 (직 무 중)														년 령											비 고						
	직 원				직 무				업 원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원 인 및 연 령 별	비	비	열	선	입	열	열	차	전	전	열	비	기	기	열	선	차	기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남 녀 사 상 별	승	강	락	단	중	돌	선	축	돌	돌	돌	지	중	타	락	단	적	중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합 계																																
계	사 망																															
	중 상																															
	경 상																															
남	사 망																															
	중 상																															
	경 상																															
녀	사 망																															
	중 상																															
	경 상																															

<제 14 호 서식>

종별원인 분석표(년 월분)

요인별 구분	합계	중 사 원 위 급 상 부 주 의																															
		역										소																					
사고원인별	계	보안장치	전철위급	전도중전환	전화출발입찰	전발발찰	입전환발량	유치차량통	유치차량통	입작업발량	입타합소통	지장입환	차량접속	한계유지	무위자격자급	가수	열차감시량	운전기조행	간수질무량	소계	무자격자전	계동위급량	신호오전	신호확인용	제호속도과	제동기능용	열차감시량	무유도전	입환작업	차량검점용			
운전사고 사고원인별 사고종별	열차접속																																
	차량접속																																
	충돌사고																																
	불선재고타																																
부내 원인	차량접속																																
	충돌사고																																
	불선재고타																																
	제호속도과																																
	제동기능용																																
	열차감시량																																
	무유도전																																
	입환작업																																
	차량검점용																																
	제호속도과																																
	제동기능용																																
	해원인 해원인	열차접속																															
충돌사고																																	
불선재고타																																	
제호속도과																																	
사상	열차접속																																
	충돌사고																																
	불선재고타																																
중계																																	

사고분류	사고구분	요인별 구분 사고원인별 사고종별	중 사 원 위										급 상 부 주 의												
			승 무 관 리 소					공 무 소					차 량 공 작 소 (관 계)												
			기 소	결 승 무 지 연	차 량 감 시	가 전 불 차 선 량	소 계	신 불 호 장 치	전 보 수 불 량	작 업 도 구	매 일 장 출 모	선 불 로 보 수 량	도 로 관 리	간 수 집 무 량	전 관 차 선 계	소 계									
운 전 사 고		열 차 충돌																							
		열 차 탈선																							
		열 차 화재																							
		열 차 사고																							
		기 타																							
운 전 내 지 인		차 량 충돌																							
		차 량 탈선																							
		차 량 고장																							
		열 차 분 리																							
		열 차 회 행																							
		차 량 일 주																							
		전 철 기 고 장																							
		신 호 장 치 고 장																							
		선 로 고 장																							
		전 차 선 고 장																							
		중 전 고 장																							
		열 차 지 연																							
		이 선 지 연																							
		폐 색 취 급 위 반																							
		신 호 취 급 위 반																							
해 해 원 인		열 차 방 해																							
		선 로 지 향																							
		중 전 장 애																							
		보 안 장 치 장 애																							
		기 타																							
사 상		차 량 재 해																							
		선 로 재 해																							
		중 전 재 해																							
		보 안 장 치 장 애																							
		기 타																							
총 계																									

사고분류	요인별구분 사고원인별 사고종별	실질장비합										기타																					
		매일질손	매일해드모	깨간확장	케불균트형	목불균울형	전철기량	침단계조손	침단계조모	신호기장	선로차량합	소재	제침차류입	인축침입	선로침입	열차에서후락	자동차침입	노사암선부과	노반유실	침수	낙석	치석	투석	방무	사상자발견	장애물방치	차량배사용	작업중상	공전	기타			
운전사고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열차상사																																
	기타																																
운전내선위해인	차량충돌																																
	차량탈선																																
	차량고장																																
	열차분리																																
	열차퇴행																																
	차량일주																																
	전철기고장																																
	신호장치고장																																
	선로고장																																
	전차선고장																																
	송전고장																																
	열차지연																																
운전외선위해인	이선지연																																
	색취위반																																
	신호취위반																																
	기타																																
	열차방해																																
	선로장애																																
	송전장애																																
	보안장치장애																																
	기타																																
	계																																
	사상	승하차사상																															
		타동적사상																															
침무사상																																	
기타사상																																	
계																																	
총계																																	

< 제 15 서식 >

사고책임소재 분석표(년 월 분)

사고분류	사고구분	장별 년령근속년수 처방양정별 사고종별	책임 인원 고수	년							승무관리소					차량공작소					공무소																			
				역 장	조 역	지 도	신 호 원	구 내 원	역 무 원	기 타	계	주 임	조 역	지 도 운 전 사	운 전 기 사	기 타	계	조 역	검 수 장	검 수 원	난 방 원	조 기 원	기 타	계	조 역	기 술 원	기 공 원	선 로 원	영 선 원	조 기 원	간 수	기 타	계							
유전사고		열차 충돌																																						
		열차 탈선																																						
		열차 화재																																						
		사상사고 기타																																						
운내		차량 충돌																																						
		차량 탈선																																						
		차량 고장																																						
		열차 분리																																						
		열차 퇴행																																						
		차량 일주																																						
		전철기 고장																																						
		신호장치 고장																																						
		선로 고장																																						
		전차선 고장																																						
저인		중견 고장																																						
		신호취급위반																																						
		열차 지연																																						
		이선 지연																																						
해원인		폐색취급위반																																						
		기타																																						
		부열차 방해																																						
		선로 지장																																						
해원인		중견장																																						
		보안장치 장애																																						
		기타																																						
		차량 재해																																						
사상		선로 재해																																						
		중견 재해																																						
		보안장치 재해																																						
		기타																																						
총계		계																																						
		승하차 사상																																						
		타동적 사상																																						
		침묵자 사상																																						
총계		기타 사상																																						
		계																																						

< 제 16 호 서식 >
 운전사고부속보고서
 1. 랑팔표 (년 월분)

사고구분	구분	사고전수	책임사고	취급부주의	차량량	시설	건기	타동조건	계	요인							시간				일기				발생장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0	4	8	12	16	20	계	맑음	흐림	눈	강수	폭풍	계	금융	보객	공사	인환	계		
사고구분	사고종별									0 4	4 8	8 12	12 16	16 20	20 24	계																					
유전사고	열차 충돌																																				
	열차 탈선																																				
	열차 화재																																				
	사상사고																																				
	기타																																				
내원	차량 충돌																																				
	차량 탈선																																				
	차량 고장																																				
	열차 분리																																				
	열차 퇴행																																				
	차량 일주																																				
	전철 기고장																																				
	진호장치고장																																				
	선로 고장																																				
	전차선 고장																																				
	중전 고장																																				
	열차 지연																																				
	이전 지연																																				
	폐쇄회급위반																																				
	신호위반																																				
해원	열차 방해																																				
	선로 장애																																				
	중전 장애																																				
	보안장치 장애																																				
	기타																																				
기타	승하차 사상																																				
	타동차 사상																																				
	진무 사상																																				
	기타																																				
합계																																					

사고분류	구분	동력차				열차영향					사상인원수			의해															
		TC	M	M'	기	해열차		타열차			구원			사망	중상	경상	차량관계	선로관계	시설관계	응급부구비	인명피해	건차선관계	기타	계	비고				
						정지	지연	지장	영향	운속	구원	기교	기중																
유전사고	열차 충돌																												
	열차 탈선																												
	열차 화재																												
	사상사고																												
	기타																												
유전원인	계																												
	부차량 충돌																												
	부차량 탈선																												
	부차량 고장																												
	내열차 분리																												
	내열차 퇴행																												
	내차량 일주																												
	전철기 고장																												
	신호장치 고장																												
	선로 고장																												
	건차선 고장																												
	양전 고장																												
	열차 지연																												
	이선 지연																												
	지인	배색취급 위반																											
신호취급 위반																													
기타																													
부외원인																													
계																													
해해원인	차량 재해																												
	선로 재해																												
	중전 재해																												
	보안장치 재해																												
	기타																												
사상	계																												
	승하차 사상																												
	타동력 사상																												
	침무 사상																												
	기타 사상																												
총계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 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가.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13

서울특별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온화시장	강남구 서초동 151-2	674.2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일부변경하고 지적 승인 하이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 법 제 18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14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학 교 (신일중, 고등학교)	도봉구 미아동 193의 9의 12 필	88,556 (26,778평)					
'	' (중, 고등학교)	성동구 중곡동 산3의 18	23,736 (7,180평)					
'	'	강남구 지여동 산 23의 14의 15 필	33,389 (10,100평)					
기 정	' (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산 7의 2 부근	16,529 (5,000평)					
변 경	' (단국중, 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산 7의 2의 3 필	38,446 (11,630평)	추가 6,630평				
기 정	' (덕성여자대학)	도봉구 쌍문동 414-11의 87 필	145,278 (44,023평)					
변 경	'	도봉구 쌍문동 414-11의 107 필	190,024 (57,482평)	학교-운동장 간 2,578평 추가 16,215평				
신 설	' (인평고등직업학교)	영등포구 오류동 산 43의 5	30,218 (9,150평)					
나. 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정	종 정	비 고
기 정	소로	3		6m	44m	쌍문동 427의 20	쌍문동 427의 22	덕성여자대학 용지내 도로 폭지 및 변경
변 경	'	'		'	19m	'	'	
기 정	'	'		'	175m	쌍문동 산 278의 4	쌍문동 439	
변 경	'	'		'	175m	'	'	
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운 동 장 (수영장)	도봉구 쌍문동 429의 2의 2 필	9,102㎡ (2,578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6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행정

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전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이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3.15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 (공용외 청사) 조사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용외 청사 (중구청)	중구 예관동 83-10 외 99필지	6,072.4 ㎡ (1,836.9평)	국유지 : 442.3평 사유지 : 1,394.6평
(신설)	공용외 청사 (국회의원회관)	영등포구 여의도동 1-440 외 13필지	13,249.6 ㎡ (4,008평)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7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74 호 (77.3.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한다.

1977.4.13
서울특별시장

변 경 후				변 경 전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보호구역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보호구역
18	관훈동 이진승가	종로구관훈동 30의1		1	관훈동 이진승가		
19	운니동 김승현가	종로구운니동 114의33	종로구 운니동 114의33 호 (336.4평)	2	운니동 김승현가	종로구 운니동 114의9	종로구 운니동 114의9 (642평)

변 경 후				변 경 후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 호 구 역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 호 구 역
20	삼 각 동 조흥은행가	중구삼각동 36의2	중구삼각동36의2 (167.30평)	3	중 구 조흥은행가		중구 삼각동 32의6
21	명 료 동 김종국가	종로구명료동 3가15의3	종로구명료동3가 15의1,2,3호 (57평)	4	명 료 동 김종국가	종로구명료동3가 15	종로구명료동3가 15의1,2호일원 (일부시유지포함)
22	가 회 동 백계인가	종로구가회동 93의1		5	가 회 동 백계인가		
23	옥 인 동 서용택가	종로구옥인동 47의33		6	옥 인 동 서용택가		

◎ 서울특별시고시제 108 호

서울특별시 1977년도하천토석,
사력채취료고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1977년도 하천토석, 사력 채취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4.18

서울특별시장

1. 하천(한강)토석, 사력(원석)
1㎡당 채취료 134.10원
2. 열담: 각구출장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78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탐, 신탐추가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제55조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 공고
한다.
2. 환지계획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7.4.

서울특별시 강

①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

②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일부 토지

③필지수 : 27 필지

④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80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61 호 (77.3.

26)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한 영동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 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지정 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4.

서울특별시 강

환지계획 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지정면적 : 5,704 평

다. 변경지정위치 : 강남구 서초동 산 182 의 2 호의 5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81 호

영동제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공고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대하여 건설부 공고

제 38 호 (77.4.2) 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되었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척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서울특별시

사업계획변경개요

1. 사업명 : 영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위치 : 강남구 청담동, 학동, 신사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압구정동, 도곡동, 서초동 각 일부
3. 시행면적 : 당초 13,072,137㎡
(3,936,184평)
변경 13,071,917㎡
(3,954,237평)
4. 시행기간 : 1977.8.21 ~ 1978.12.31
5. 유의사항
가. 사업실시기간중 사업집행상 필요한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가 사용케 되오니, 환지여정지 지정 및 정지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상기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각음한다

사 령

◎ 1977.4.11

중로구 이상훈
지방행정주사보
경제기획원 진출을 명함.

◎ 1977.4.13

도시가스사업소 신무균
지방서기관
도시가스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동구 업주창
지방서기관
도시가스사업소장에 포함.

<p>강 남 구 김 동 훈 서 기 관</p> <p>성동구 시민국장 직무대리할 명함.</p> <p>공무원교육원 김 완 규 행정사무관</p> <p>강남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할 명함.</p> <p>도 로 파 권 경 수 지방토목기사보</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77.4.14</p> <p>종 합 종 말 강 석 열 처리사업소 지방기계기사</p> <p>종합중달처리사업소 처리과장 직무 대리할 명함.</p> <p>공 업 과 김 명 모 지방행정 주사보시보</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77.4.15</p> <p>중 구 조 경 호 지방행정사무관</p> <p>부직을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서 울 북 별 시 장</p>	